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산림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법률 제19487호, '23.6.20. 공포, '23.12.21.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사업을 허용하는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그 요건과 범위를 신설(안 제3조 1항 관련 별표 1의2 신설)

1)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의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 부실 시공 방지 및 공중의 안전관리 강화

2)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계통이 발주한 사업으로 한정

나. 건축공사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서식을 보완(안 제3조2항 관련 별지서식 개정)

- 1) 건축공사 신고의 경우, 요건과 범위를 서식에 추가하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의 신고와 혼선이 없도록 구분을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3. 10.20~11.23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령안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조경사업의 범위 등”을 “조경·건축사업의 범위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또한 건축사업의 업종은 건축 공사업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고서에 따른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고서”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고서”로 하고, 서식변경 내용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공사사업의 요건 및 범위 (제3조제1항 관련)

요 건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
범 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2 제5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건축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본금 (건축공사업일 경우, 기재)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업			
발 주 처 (건축공사업일 경우)			
소재지 및 면적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일 경우, 포지의 소재지임)	소재지		면적
	1		
	2		
	3		
	4		
수목 보유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일 경우)	외종(총본)		
기술능력 보유 (건축공사업일 경우)	명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산림경영기술자 포함)의 명단과 해당인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명단과 해당인의 재직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에 한함)	
	3. 신고일 현재 최근의 총회에서 의결한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4. 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부등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	검토·확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	→	결재	→	통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u>조경사업의</u>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후단 신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u>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u>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u>조경·건축사업의</u>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u>또한, 건축사업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u>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u>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u> 신고서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연 락 처	(042) 481 - 4155